

## ◎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3.12.21. 조례 제12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에게 최우선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시설별 관계 법령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장이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제한)**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 또는 수강신청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사용료·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됐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제정 2023.12.21.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여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

[별표 1]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유형		명칭	위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여주시 청소년수련관	여주시 교동로 25
	청소년문화의집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 신륵사길 6-8
		가남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 가남읍 설가로 897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여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주시 청심로 88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여주시 청심로 88

[별표 2]

1. 청소년문화의집(제12조 관련)

가.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원)

시 설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반	
멀티실, 체험창작실, 연습실(밴드, 댄스)	2시간	무료	40,000	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강의실, 코딩존, 동아리실	1회/2시간	무료	20,000	
탁구장	1인/2시간	무료	2,000	

<기타사항>

- 1)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한다.
- 2) 청소년시설 자체행사 및 활동, 강좌 시간외 대관 가능
- 3) 연습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시 해당요금의 50% 적용한다.
- 4)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과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단, 사용시간 연장은 다음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5) 기준시간 이내 사용 할 경우 기준사용료를 적용한다.
- 6) 중복 할인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
- 7) 그 밖의 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는 유사시설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청소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강좌 프로그램	1인/1과목/월	10,000~60,000	문화·교육·생활체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1인/1일	5,000~30,000	수련활동, 캠프 등

<기타사항>

- 1) 강좌 프로그램은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이 원칙이며, 4주를 한 달로 계산한다.
- 2) 프로그램 운영 시 공공성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사업
  - 학교 및 지역 연계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공공의 이익이 되는 목적사업 등

##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제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청소년 이하)	비 고
일반상담	1회/1시간	무료	
미술/놀이치료	1회/1시간		
종합심리검사	1회		

### <기타사항>

-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 받는 위기청소년은 별표3의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별표 3]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연번	감면대상	감면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	전액감면
2	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청소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	
9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여주시 소재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0분의 50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2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23	그 외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

- <기타사항>
- 1)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 2)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 4)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수강료는 위의 감면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 4]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4조 관련)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시의 행사 또는 청소년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세부 반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